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000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원이었다던 자의”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다던 사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활동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유족”이란 <u>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u></p> |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u>-----</p> <p>-----</p> |